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14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4. 14.(목)]

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14.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: 2022. 4. 8.
김종대·구점득·김경수·김경희·김상찬·김상현
김장하·문순규·박성원·박춘덕·박현재·백승규
심영석·이종화·이천수·전병호·정순욱·조영명
진상락 의원(19명)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4. 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14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 개회 중
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4.14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대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❍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의 문화·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동예술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❍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❍ 위치, 시설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4조)

❍ 입주작가의 선정,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❍ 예술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: 의안번호 1040, P6 ~ P7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□ 제정 배경

❍ 창동예술촌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가. 안 제1조(목적)는

❍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.

나. 안 제2조(명칭과 위치) ~ 제4조(사업)는

❍ 예술촌의 명칭, 위치, 예술촌의 시설 및 예술촌의 수행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안 제5조(입주작가 선정) ~ 제6조(입주작가 지원)는

❍ 예술촌의 입주작가 선정과 입주작가 지원 근거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라. 안 제7조(위탁운영) ~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는

❍ 예술촌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과 수탁의 의무,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

□ 종합의견

❍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창동예술촌에 대한 운영, 지원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지방자치법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제2항 제5호(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)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 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
❍ 주요 내용은 입주작가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, 예술촌 관리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,

❍ 지역의 문화ㆍ예술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